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황익수

전화 052-257-0300 / 팩스 052-228-4320

보도자료

2019. 7. 4.(목)

자료문의 : 형사3부장실
전화번호 : 052-228-4306
주책임자 : 부장검사 허인석

제 목

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 수사결과

□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허인석)는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¹⁾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, ㄷ회사를 통해 중국,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, 2008. 6.경부터 2018. 9.경까지 **26개 업체에 1,225억원** 상당을 판매하고 해외 업체에 **11억원** 상당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여, 금일(7. 4.) 원산지 조작에 가담한 **8명을 불구속기소**하였음

※ 'Made in China'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, 'ㄱ회사의 로고, KOREA'를 새로 마킹하여 판매

□ 원산지 조작 플랜지는 발전소, 정유설비,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 시설에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도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,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사용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처에 수사결과 통보하였음

1) 플랜지(Flange) :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으로, 관 지름이 큰 관, 내부의 압력이 높은 관, 또는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관에 사용되고, 정유시설,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시설에 주로 사용됨.

I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- 주요 피고인
 - A○○(73세), ㄱ회사 회장
 - B○○(68세), ㄱ회사 前 대표이사
 - C○○(58세), ㄱ회사 생산총괄이사
 - D○○(51세), ㄷ회사 대표이사
- 범죄사실 요지(별지 피고인별 범죄사실 요지 참조)
 - 2008. 6.~2018. 9. 중국 등에서 수입한 플랜지를 공급받아 자체 제작한 물건인 처럼 마킹하여 원산지를 조작한 후, **1,225억원** 상당의 플랜지를 26개 업체에 판매하여 **특경법위반(사기), 대외무역법위반** 등
 - 2015. 7.~2018. 10. 위와 같이 원산지를 조작한 **11억원** 상당의 플랜지를 해외 6개국에 수출하고, 국내산으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여 **대외무역법위반, 관세법위반**

II 수사 경과

- 2019. 1. 울산세관 송치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인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어 내사 착수
- 2019. 4. 서울, 울산 등 대상 업체 3군데 **압수수색**
- 2019. 4.~6. 피의자, 참고인 등 조사
 - 압수물 분석, 관련자 조사를 통하여, **2008. 6.경부터 2018. 9.경까지 1,225억원을 판매한 사실, 다수의 인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, 주요 산업기반시설에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사용된 사실** 확인됨
 - 피의자들 **8명 특경법위반(사기)** 등으로 인지
- 2019. 7. 4. 불구속구공판

Ⅲ

수사 의의

○ 원산지 조작 플랜지의 대규모 유통 사실 규명

-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어, 정유설비,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시설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

※ 일부 피해회사는 본건 수사를 통하여 원산지 조작 플랜지를 공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, 안전성 차원에서 기 설치한 플랜지를 철거하고 새로 국내산 플랜지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

- 원산지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, 플랜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는 실정임

※ 시험성적서 : 플랜지의 소재 함량 비율 및 인장강도 등의 수치가 기재된 서류

○ 안전성에 대한 사전점검 필요성 통보

-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사용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, 관계 행정부처에 수사결과 통보. 끝.

[별지]

	피의자	직책	범죄사실 요지	처분
1	A○○ (73세)	ㄱ회사 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08. 6.~2018. 9.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1,225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(사기), 대외무역법위반 ▶ 2015. 7.~2018. 10. 원산지 조작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	2019. 7. 4. 불구속기소
2	B○○ (68세)	ㄱ회사 前 대표이사	▶ 2008. 6.~2014. 12.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911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(사기), 대외무역법위반	상동
3	C○○ (58세)	ㄱ회사 생산총괄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08. 6.~2018. 9.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1,225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(사기), 대외무역법위반 ▶ 2015. 7.~2018. 10. 원산지 조작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, 관세법위반 	상동
4	D○○ (51세)	ㄷ회사 대표이사	A○○과 동일	상동
5	E○○ (66세)	ㄱ회사 前 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5. 1.~2017. 11.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215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(사기), 대외무역법위반 ▶ 2015. 1.~2017. 11. 원산지 조작 플랜지 7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	상동
6	F○○ (53세)	ㄱ회사 대표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7. 11.~2018. 9.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공한 후 97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특경법위반(사기), 대외무역법위반 ▶ 2017. 11.~2018. 9. 원산지 조작 플랜지 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	상동
7	G○○ (55세)	ㄱ회사 이사	A○○과 동일	상동
8	A회사	플랜지 제조회사	양벌규정 적용	상동